



# 2021 2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

## 사업설명회 ::Q&A::

**근무개시** | 10월 전체 근무시간(126시간)만 채우면 근무 시작일을 10월 1일이 아닌 그 다음주(10월 6일경)으로 변경 가능한가요?

아니오, 예술인력의 경우 10월 1일부터 근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.

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, 주 30시간을 준수하여 근무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.

예) 공연기간 출근, 지방 공연 출장 등

**근무시간** | 하루 6시간 근무할 경우 중식시간(휴게시간)은 1시간인가요?

<근로기준법 제 54조 ✓>에 따라 근무자는 반드시,

- 1)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휴식
- 2)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식

정해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무 일정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
## 근무지설정 | 특정 직무의 경우 자택근무가 가능한가요?

자택근무는 불가능합니다.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방문 예정입니다.

실제 근무가능한 사무실을 주근무지로 설정해주세요.

\* 예외: 음향장비 등 자택 내 음악작업실(증빙서류 必) 등 혹은 개인1인 그룹은 협회 문의

## 근무지설정 | 주근무지 설정 후 변경 및 추가가 가능한가요?

주근무지는 최대 5개(단체) 혹은 3개(개인그룹)까지 가능합니다.

주근무지 설정 후 변경 및 추가는 불가능합니다.

추후 변경이 불가피한 단체에 한하여, 협회 문의주시면 승인 후 관련절차 안내 드리겠습니다.

\* 5개 근무지 중 다른 근무지로 변경 시 1개 삭제 후 1개 추가

## 기본사항 | 기존 신청했던 프로젝트와 달라도 될까요?

기존에 제출해 주셨던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로젝트 변경은 불가합니다.

## 기본사항 | 기존 신청했던 직무와 달라도 될까요?

직무 변경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회 쪽으로 문의주시면 직무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절차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\* 신청서를 바탕으로 협회 내부 승인 과정을 거쳐 직무 변경 가능 여부 안내 드리겠습니다.

## 야간근로 | 평일공연 오후 10시 이후 끝날 경우 야간근무 가능한가요?

공연이 늦게 끝날 경우에도 **야간근로 및 연장근로는 불가합니다.**

이 경우, 보다 일찍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10시 이전 퇴근해 주셔야 합니다.

\* 단, 오전 9시 이전 근무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근로인정 불가능 하니 출근 시작 시간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## 근무사항 | 주근무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출퇴근 가능한가요?

출퇴근 기록은 반드시 사전에 신청된 주근무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하며 시프티에 등록된 근무지 내에서는 출퇴근이 가능합니다. 부득이한 경우, 반드시 **외근에 대한 단체관리자의 승인**이 필요합니다.

## 휴가관련 | 10월에 근무자가 휴가 신청을 하면 바로 갈 수 있나요?

아니오, 10월엔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10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(6시간)는 익월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## 휴가관련 | 12월 만근시 휴가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?

12월은 만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연차 2개가 발생되며 12월에 미리 연차 발생되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## 주휴일 | 단체별 주휴일 변경이 가능한가요?

뮤지컬 협회의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월요일입니다.

단체별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월 1일 이전에 협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일요일로만 주휴일 변경 가능합니다.

\* 단, 한번 설정된 주휴일은 변경 불가이며, 단체 내 모든 예술인력의 주휴일은 동일해야 합니다.

## 중도퇴사 | 예술인력의 중도퇴사가 가능한가요?

적격심사에 부합하는 모든 예술인력분들과 3개월 근무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
단, 부득이한 퇴사의 경우 사전 논의를 통해 협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, 해당단체는 재채용과정을 진행하여 대체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.

## 기타 | 단체관리자도 시프티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나요?

직원분들의 단체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관리자도 시프티 설치 및 가입을 필수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.

\* 원칙적으로 단체관리자는 1명만 등록이 가능하며 대표자가 아닌 실무자로도 등록 가능합니다.

## 기타 | 채용후보자 중 적격심사가 통과되지 않아 인원이 부분적으로 승인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제출하신 후보자 중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할 경우 미달된 인원만큼 추가로 채용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. 또는 기 제출해주신 채용후보자 명단 통보서에 있는 후보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